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 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213-253호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6. 27.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침해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조사('21. 2. 18. ~ '23. 5. 4.)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 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의실 관리 및 버스 승차 관리를 위해 '21.6.10.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접근 시스템	세부 메뉴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 보유 건수
		성명, 학과, 단체명, 행사명, 사용일시, 건물명, 연락처	
		출발캠퍼스, 출발일자, 출발시간, 학번, 성명, 학과, 순번, 인증번호	300,560건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관련 사실관계

1) 신고 내용

피심인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특정 계정을 여러 사회복무요원이 함께 사용하였고, 계정을 생성한 사회복무요원이 전역한 이후에도 해당 계정을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사용하였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다.

2) 사실관계 확인 결과

피심인은 2010년경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정보시스템상 '강의실 관리'및 '버스 승차 관리'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권한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현황을 출력한 후 경비 근무자 등 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이 직원과 별도 메뉴로 접속하도록 하는 등 피심인이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시스템명	세부 메뉴	직원 계정 접속시 접근 가능 정보	사회복무요원 계정 접속시 접근 가능 정보
		성명, 소속, 학번, 캠퍼스	성명, 학번, 연락처
		성명, 소속, 캠퍼스	성명, 학번, 연락처
		성명, 학번, 캠퍼스	성명, 학번
		성명, 학번, 학과	성명, 학번
		성명, 학번, 학과, 학년, 캠퍼스	성명, 학번

'20. 9. 18. 피심인 측에 전입한 사회복무요원(신고인)이 신규 계정 생성 없이 기존 계정(전임 사회복무요원이 '17.6.27. 생성)을 인계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해당 계정을 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공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20.10.26. ○○병무청으로부터 공문('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범위') 수신 후 '20.11.12. 해당 시스템 내 개인정보를 비식별(마스킹) 조치하고, '20.11.16. 사회복무요원들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18.8.24.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고, '20.11.16. 해당접근권한을 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 계정을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발급하지 않고 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생성한 계정을 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공유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예정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5. 1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6. 1.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5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사회복무요원 1명의 계정을 사회복무요원 3명이 공유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1회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ਜਦਰਜ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별표2]의 가중 기준에 따라,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금액의 10%인 60만 원을 가중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통지 전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조사 협조.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 자진 시정 등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5조제2항제6호	600	60	300	360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6월 27일

위원장 지성우 (서명)

위 원 강정화 (서명)

위 원 염흥열 (서명)